서울특별시 이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193

2024년 12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0월 16일 김영옥 의원외 15명

2.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3. 상정일자 : 제327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11월 2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김영옥 의원)

1. 제안이유

- 저출생 현상으로 아동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학업 스트레스, 또래 관계 문제, 복잡하고 빠르게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우울증, 불안 장애 등은 아동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습 능력 저하, 대인관계 문제 등을 야기할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할 경우, 정신질

환이나 사회 부적응 등으로 이어져 미래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및 낙인 감·편견 등으로 인해,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를 그대로 방 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아동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아동기에 조기 개입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적성에 맞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이에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지원으로 심 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아동 맞춤형 심리·정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또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 탁 관련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동의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2조2제1항)
- 아동의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12조2제2항)
- ㅇ 아동의 정신적 건강 증진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 관련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2제3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 시행령」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입법예고 (2024.10.23.~10.27.) 결과 : 의견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개정안의 개요

- 저출산 문제로 아동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매년 우울증을 진료받은 18세 미만 아동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11세 아동 중 우울증을 진료받은 아동수는 2018년도 1,849명에서 2022년 3,541 명으로 91.5% 급증하였음¹).
- 이에 개정안은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사항 검토

- □ 아동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12조의2제1항 신설)
 - 안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규 정하고 있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아동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아동복지

¹⁾ 김병규 기자, 연합뉴스, '어린이 우울증 5년새 갑절로…5년간 초중고생 822명 극단선택', 2023-09-27

법」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동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²)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 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안 제12 조의2제1항은 이러한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구체화하기 위함으 로써 법적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지원사업 (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

안 제12조의2제2항에서는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
 이 시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아동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 ② 시장은 아동의 정신 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동 심리·적성 진단 및 맞춤 형 프로그램 운영			
	2.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			

^{2) 「}아동복지법」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④ 국가와 <u>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 · 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u> 마련하여야 한다.

비스 연계

- 3. 아동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정보제공
- 4.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간 운영
- 5.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 운영
- 6. 그 밖에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 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 ○「아동복지법」제11조의2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2023년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등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심리·정서 지원정책이 부족하고 기존의 심리정서 지원서비스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현실적 제약이 있음이 지적되었음4).
- 안 제12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시행할 수 있는 △아동 심리·적성 진단과 그에 따른 맞춤형 진단프로그램,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보호자 상담 및 교육 제공,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간 운영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3)「}아동복지법」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① 국가와 <u>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아동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u>

⁴⁾ 서울시여성가족재단('23.7~'23.12.), 서울시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23년 아동영향평가, p.212.

맞춤형 아동 심리 지원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아동의 심리·정서 서비스는 학교5)나 고위험군 대상의 지역 정신건강 전문기관6)에서 주로 담당해옴에 따라 일반 아동에게는 검사 후 충분한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아 공급자 중심의 성격이 강하고, 위클래스(교육청)의 경우 아동 수 대비 교사 수가 적고 외부 상담기관의 이용횟수가 한정되어 서비스의 양과 질에 제한 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7).
- 따라서 아동의 심리·정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충분히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자(아동·보호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민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원사업 (안 제12조의2제3항 신설)

 안 제12조의2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아동의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⁵⁾ Wee클래스(학교內, 서울 기준 초등학교 中 202개소), Wee센터(교육청, 서울 기준 26개소) - 학교부적응. 학교폭력 등 관련 개인상담 및 치료(「위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⁶⁾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 기준 25개소)** - 개인상담(일탈 등) 및 복지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정신건강복지센터(서울 기준 25개소)** - 중증정신질환의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상담 및 치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⁷⁾ 서울시여성가족재단('23.7~'23.12.), 서울시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23년 아동영향평가, p.22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아동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체계적인 아동 심리·정서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적인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이를 위해 안 제12조의2제2항의 지원사업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3 종합 의견

- 저출산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아동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학교생활 부적응 등 우울이나 불안 등을 겪는 아동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정신건강 인력 및 인프라 확충과 상담·치료를 위 한 연계 프로그램 등 대책 강화 마련이 요구되어 왔음.
- 이에 개정안은 서울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 및 그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와 지원사업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 ㅇ 아울러 기존의 학교나 정신건강 전문기관의 기능을 상호보완하며

이용자(아동·보호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민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 가결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옥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93 발 의 년 월 일:2024년 10월 16일 발 의 자:김영옥, 강석주, 김길영,

김영철, 김용호, 김태수, 남창진, 민병주, 박성연,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유만희, 이경숙, 이원형, 황철규 의원(16명)

1. 제안이유

- 저출생 현상으로 아동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학업 스트레스, 또래 관계 문제, 복잡하고 빠르게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 해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우울증, 불안 장애 등은 아동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습 능력 저하, 대인관계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 하지 못하고 방치할 경우, 정신질환이나 사회 부적응 등으로 이어져 미래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및 낙인감 편견 등으로 인해,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아동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아동기에 조기 개입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적성에 맞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장기적인 사 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이에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지원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아동 맞춤형 심리 정 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 또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관련 근 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아동의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2조2 제1항)
- 나. 아동의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12조2제2항)
- 다. 아동의 정신적 건강 증진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2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 신 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제12조의3으로 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아동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 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동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아동 심리·적성 진단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2.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 3. 아동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ㆍ정보제공
 - 4.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간 운영
 - 5.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 6. 그 밖에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 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2조의2 (생 략)

제12조의3(현행 제12조의2와 같음)

<u>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u> <u>비용추계서</u>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제12조의2(이동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	0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 사업비용 발생 ⇒ 5년 총비용 9,660,354천원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이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 사업비용(안 제12조의2)
 -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사업수행 비용

나. 전제

-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 사업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센터) 위탁을 전제
 - (인 건 비) 센터장, 상담/치료전문가, 행정인력을 전제
 - ⇒ 기본급, 제수당, 퇴직급여 충당금, 사회보험료 소요 전제
 - (운 영 비) 사무관리비, 회의운영비, 특근매식비, 임차료¹⁾,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 여비 등이 소요됨을 전제
 - (사 업 비) 온라인 심리검사, 체험형 마음탐색, 맞춤형 프로그램,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 심화검사, 부모교육, 진로체험 프로그램, 전문자문단, 유관기관 네트워크, 홍보비, 개소식 등이 소요됨을 전제
 - (조 성 비) 센터 리모델링비2), 물품구입비3), 개소식 비용 발생을 전제(1차년도에 한해서 발생)
- 2025년부터 비용이 발생하며 매년 소요됨을 전제(1차년도는 센터 개소시기에 맞춰 4개월분만 추계) ※ 추계기간(2025~2029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5년~2029년)

라. 방법

ㅇ 서울시 여성가족실 제공자료를 토대로 작성

¹⁾ 정수기, 복합기, SW사용료 등

²⁾ 안내데스크/대기공간, 체험형 마음탐색 부스, 개인상담실, 소그룹 프로그램실, 마음활짝 힐링공간, 행정공간(센터장실, 사무실, 회의실) 등 조성비용

³⁾ 사무가구 제작 및 설치, 업무용 전자기기, 기타 전자제품 구매

3. 비용추계의 결과

총비용 = 9,660,354천원(연평균 1,932,071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위탁센터 조성 비용(안 제12조의2)	1,138,542	-	-	1-		1,138,542
지출	 위탁센터 운영관라비(안 제12조의2) 	655,524	1,966,572	1,966,572	1,966,572	1,966,572	8,521,812
	소계(a)	1,794,066	1,966,572	1,966,572	1,966,572	1,966,572	9,660,354
수입	(- 2)	2.	· -		h -	-	-
	소계(b)	(24)	7-	-	-	_	_
	□총 비용(a-b)	1,794,066	1,966,572	1,966,572	1,966,572	1,966,572	9,660,354

주 : 서울시 여성가족실 제공자료를 토대로 작성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제 승

₾ 02-2180-7954

e-mail: smclt22@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비용요소
 -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 사업비용(안 제12조의2)
 -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사업수행 비용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 = 9,660,354천원(연평균 1,932,0714)천원)
 - = ① 위탁센터 조성관련 비용+ ② 인건비 + ③ 운영비 + ④ 사업비
 - = ① 1,138,542천원 + ② 4,004,390천원 + ③ 791,622천원 + ④ 3,725,800천원

연도별 소요비용(5개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위탁센터 조성관련 비용 		1,138,542	-	-	-	-	1,138,542
	○ 위탁센터 운영관리비	인건비	308,030	924,090	924,090	924,090	924,090	4,004,390
		운영비	60,894	182,682	182,682	182,682	182,682	791,622
		사업비	286,600	859,800	859,800	859,800	859,800	3,725,800
	□총 비용		1,794,066	1,966,572	1,966,572	1.966,572	1,966,572	9,660,354

^{4) 9,660,354}천원(추계기간 5년 총비용) ÷ 5 = 1,932,070.8천원(≒1,932,071천원)

① 위탁센터 조성관련 비용(1차년도만 발생)

- = 1,138,542천원
- = 리모델링비 + 물품구입비 + 개소식 행사비
- = 1,048,000천원 + 78,000천원 + 12,542천원

② 인건비(매년 발생)

- 1차년도(4개월5)) 연평균 비용
- = 308,030천원
- = 기본급 + 제수당 + 퇴직급여 충당금 + 사회보험료
- = 169,764천원 + 57,586천원 + 56,838천원 + 23,842천원
- 2차년도 이후 연평균 비용
 - = 924,090천원
 - = 기본급 + 제수당 + 퇴직급여 충당금 + 사회보험료
 - = 509,292천원 + 172,758천원 + 170,514천원 + 71,526천원

③ 운영비(매년 발생)

- 1차년도(4개월) 연평균 비용
- = 60,894천원
- = 사무관리비 + 회의운영비 + 특근매식비 + 임차료 + 공공요금 등 + 인쇄물 등 + 여비
- = 26,585천원 + 3,904천원 + 4,212천원 + 6,000천원 + 14,537천원 + 3,096천원 + 2,560천원
- 2차년도 이후 연평균 비용
- = 182,682천원
- = 사무관리비 + 회의운영비 + 특근매식비 + 임차료 + 공공요금 등 + 인쇄물 등 + 여비
- = 79.755천원 + 11.712천원 + 12.636천원 + 18.000천원 + 43.611천원 + 9.288천원 + 7.680천원

4 사업비(매년 발생)

- 1차년도(4개월) 연평균 비용
- = 286,600천원
- = 프로그램 등 운영비용 + 홍보비
- = 277,600천원 + 9,000천원
- 2차년도 이후 연평균 비용
- = 859,800천원
- = 프로그램 등 운영비용 + 홍보비
- = 832,800천원 + 27,000천원

^{5) 2025}년 개소예정이므로 4개월간 비용만 책정